

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0. 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정이유

-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이 개정(2010.3.3)되어 2010. 7. 1부터 시행됨에 따라,
-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 기관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·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목적 (안 제1조)
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
- 정의 (안 제2조)
사실조사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
- 사실조사 의뢰 사유 (안 제3조)
 -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
 -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·인력이 절감되는 경우
- 관련 기관 또는 단체 (안 제4조)
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
- 협약 (안 제5조)
 -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 체결
 - 협약서에는 목적, 범위, 기간, 비용, 책임과 의무, 해지, 효력 발생 등 규정

3. 조례안 : 붙임

4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5. 관련법령

○ 「담배사업법시행규칙」 제7조제3항, 제4항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사실조사는 시장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의3 규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.

제3조(사실조사 의뢰) 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
2.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·인력이 절감되는 경우

제4조(관련 기관 또는 단체) 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성실·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협약)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, 범위, 기간, 비용, 책임과 의무, 협약의 해지,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련 법 령

◎ 담배사업법 시행규칙

제7조(소매인의 지정절차 등)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

1. 점포(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)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

2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7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,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「행정절차법 시행령」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3.3>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 <개정 2010.3.3>

④ 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3.3>

⑤ 제4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(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)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신설 2010.3.3>

⑥ 제3항 단서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 <신설 2010.3.3>

⑦ 제6항에 따라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0.3.3>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실조사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한 소매인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